

붙임 3. 직원 채용시험 가산점수

구 분	세 분	가산점수 및 부가점수	비 고
국가유공자/ 독립유공자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와 동조 동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	필기·실기·면접시험 등 각 시험별 만점의 10%	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 적용
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의 가족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자와 동조 동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	필기·실기·면접시험 등 각 시험별 만점의 5%	
장애인	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	필기·실기·면접시험 등 각 시험별 만점의 3%	상동
북한이탈주민	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	필기·실기·면접시험 등 각 시험별 만점의 3%	상동
다문화가족 구성원	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	필기·실기·면접시험 등 각 시험별 만점의 3%	상동
자격(면허) 소지자	공인회계사, 세무사, 감정평가사, 기사1급 이상	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10%	당해직종에 한하여 1인1종 이상인 경우는 1종만 적용